

## 프랑스의 통신비밀보호법제 -감청기간 및 연장을 중심으로-

정보신청기관 : 법무연수원

### I. 들어가는 말

현대 전기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개인에게 편리함을 주는 반면 당사자들간의 사적인 통신에 대한 도청과 같은 전통적인 통신비밀보호의 영역에 새로운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소위 '초원복집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공적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 부문에 대한 통신비밀 침해가 심각한 현안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이다.<sup>1)</sup>

이와 같은 현실적 필요에 대한 규범적 대응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프랑스의 경우, 실정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1조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시민은 법이 정하고 있는 이 자유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통신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통신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 제한은 “전기통신적 수단을 통하여 발신된 통신의 비밀에 관한 1991년 7월 10일 법률”<sup>2)</sup>을 통해 정하고 있다.<sup>3)</sup>

다음에서는 “전기통신적 수단에 의해 발신된 통신의 비밀에 관한 1991년 7월 10일 법률”을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0, 607쪽.

2) Loi n°91-646 du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3) “전기통신적 수단에 의해 발신된 통신의 비밀에 관한 1991년 7월 10일 법률”의 원문과 의회보고서 등 자세한 사항은 프랑스의 <http://www.legifrance.com/> 참조.

중심으로 프랑스의 통신비밀보호법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프랑스의 통신비밀보호법제

프랑스의 “전기통신적 수단을 통하여 발신된 통신의 비밀에 관한 1991년 7월 10일 법률”은 감청의 유형으로 사법권에 의한 감청과 국가안보 등을 위한 감청으로 나누고 있으며, 전자의 경우 형사소송법전의 ‘텔레커뮤니케이션에 의한 통신의 감청’의 항목에 편입한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구분을 감안하여 프랑스의 통신비밀보호법제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1. 일반원칙

“전기통신적 수단을 통하여 발신된 통신의 비밀에 관한 1991년 7월 10일 법률” 제1조는 “전기·전자통신의 비밀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통신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는 통신의 비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함을 선언하고 있다.<sup>4)</sup>



4) “전기통신적 수단에 의해 발신된 통신의 비밀에 관한 1991년 7월 10일 법률”의 번역문은 대검찰청,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방안에 대한 연구, 2008의 부록편(277~283쪽)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참조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정을 가하였다.

5) Article 100-2 “Cette décision est prise pour une durée maximum de quatre mois. Elle ne peut être renouvelée que dans les mêmes conditions de forme et de durée.”

## 2. 사법권에 의한 감청

### (1) 감청의 요건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00조는 “① 중죄 및 법정형이 2년 이상의 구금형인 경죄에 관하여는 예심수사판사가 예심수사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신의 감청, 녹음 및 녹취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예심판사의 권한과 감독 하에 행하여진다. ② 감청의 결정은 서면에 의한다. 이 결정은 재판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상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감청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0조에 의한 감청결정은 감청의 대상이 되는 통신을 특정하는 일체의 요소, 감청의 이유가 되는 범죄 및 감청을 행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동법 제100-1조).

### (2) 감청의 기간 및 갱신

감청의 기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100-2조는 “감청 결정의 유효기간은 최장 4개월간으로 한다. 이 결정은 그 형식 및 기간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sup>5)</sup>라고 규정함으로써 최장4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그 형식과 기간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갱신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 (3) 감청장비의 설치 위탁 등

또한 구체적인 감청을 위해서 제100-3조는 “예심판사 또는 그의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통신부의 관할이나 감독하에 있는 조직·기관의 자격 있는 직원 또는 인가를 받은 통신 네트워크업자나 통신서비스 공급업자의 자격 있는 직원에게 감청장비의 설치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감청장비의 설치 등의 위탁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심판사 또는 그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은 감청 및 녹음의 각 조치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 조서에 감청의 개시 및 종료일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녹음은 봉인해야 한다(동법 제100-4조).

또한 예심판사 또는 그의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진실발견에 유용한 통신을 녹취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해야 하며, 이 녹취조서는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동법 제100-5조).

### (4) 녹음물의 폐기

형사소송법 제100-6조는 녹음물의 폐기에 대해서 공소시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녹음물은 검사 또는 고등검사장의 청구에 의하여 폐기되며, 폐기절차는 조서에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5) 하원의원, 상원의원, 변호사에 대한 감청의 특칙

형사소송법 제100-7조는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 변호사에 대한 감청의 특칙을 규정하였으

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①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의 전화회선에 대하여는 예심수사판사가 당해 의원이 소속된 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한 경우가 아니면 감청할 수 없다. ② 변호사의 사무소 또는 주거에 접속하는 전화회선에 대하여는 예심수사판사가 변호사회 회장에게 통지한 경우가 아니면 감청할 수 없다.”

## 3. 국가안보 등을 위한 감청

### (1) 국가안보 등을 위한 감청의 의의

“전기통신적 수단에 의해 발신된 통신의 비밀에 관한 1991년 7월 10일 법률” 제3조는 국가안보 등을 위한 감청을 동법 제4조에서 정한 조건하에서 프랑스의 국가안보, 과학·경제잠재력의 중요한 요소에 대한 보호, 조직적인 범죄·테러의 예방, “1936년 1월 10일 법률인 전투집단 및 민병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산된 집단의 재건 또는 유지의 방지 등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감청을 말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2) 감청 승인의 절차

감청 승인의 절차에 대해서 “① 전기통신적 수단에 의해 발신된 통신의 비밀에 관한 1991년 7월 10일 법률” 제4조는 “감청승인은 수상 또는 수상의 특별위임을 받은 2인 중 1인이 이유를 부기하고 서면으로 행하여진다. 이러한 수상의 감청승인은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관세담당 장

관 또는 이들 장관들이 각각 특별위임을 한 자의 2인 중 1인이 이유를 적시한 서면제안에 의하여 행해진다. ② 수상은 허가된 감청의 집행의 집중화를 조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청의 최대횟수에 대해서 제5조는 “① 수상은 본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행해질 수 있는 감청의 최대횟수를 정한다. ② 본 법 제4조에서 규정한 각 장관들간의 감청업무할당 및 배분을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국가안보 감청 통제위원회》에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3) 감청기간

감청기간에 대해서 동법 제6조는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감청승인의 기간은 최고 4월로 하며, 이러한 감청승인기간이 경과되면 그 효력은 당연히 상실한다. 감청승인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본 법이 정한 동일한 형식과 기간에 의하여 감청승인을 받게 된다.”<sup>6)</sup>고 함으로써 최초의 기간은 최장 4개월이며, 동일한 형식과 기간에 의하여 갱신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 (4) 감청관련 제한

동법 제7조는 “① 감청된 통신의 내용 중에서 본 법 제3조에서 열거된 목적과 관련된 정보만

을 녹취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녹취는 자격있는 자가 행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감청대상 정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동법 제8조는 수상에게 감청과 녹취에 대한 목록을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록에 감청의 시기와 종기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5) 녹음테이프의 파기 등

녹음테이프의 파기에 대해서 동법 제9조는 “① 녹음테이프의 파기는 녹음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에 수상의 지시를 받아 행한다. ② 녹음테이프의 파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형사소송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본 법 제3조에 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한계가 있다(동법 제10조). 또한 감청사본은 총리의 지시를 받아 본 법 제3조에서 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감청사본을 파기한 경우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청사본을 파기하는 때에는 총리의 지시를 받아 행한다(동법 제12조).



6) Article 6 “L’autorisation mentionnée à l’article 3 est donnée pour une durée maximum de quatre mois. Elle cesse de plein droit de produire effet à l’expiration de ce délai. Elle ne peut être renouvelée que dans les mêmes conditions de forme et de durée.”

(6) 국가안보감청통제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contrôle des interceptions de sécurité)

1) 조직

국가안보 감청 통제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동법 제13조는 “① 독립행정위원회인 국가안보 감청 통제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본 법이 정한 규정의 준수를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사원(Conseil d'Etat)<sup>7)</sup> 부원장과 파기원(Cour de cassation)<sup>8)</sup> 원장이 공동으로 추천한 4인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하원의장이 지명하는 임기 내의 하원의원 1인. 2. 상원의장이 지명하는 부분 교체된 상원의원 1인 ③ 위원은 정부각료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사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위원회가 인정하는 직무수행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임될 수 있다. ⑤ 위원은 연임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⑦ 위원회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임기만료 전에 사직한 위원을 대신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임기간으로 한다.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후임자는 임기가 종료된 후,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다시 임명될 수 있다. ⑨ 위원은 형법 제413조의10, 제226조의13 및 제226조의14에 의하여 직무상의 이유로 취득한 사실, 행위 또는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⑩ 위원회는 내규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가안보 감청 통제위원회의 활동 및 권한

동법 제14조는 “① 본 법 제4조에서 규정한 이유를 부기한 수상의 결정은 48시간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 항에 따른 수상의 결정이 합법적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며, 동 위원회는 위원장이 전항에 정한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합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③ 본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안보 등을 위한 감청을 허가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동 위원회는 수상에 대해 감청의 중단을 건의한다. ④ 위원회는 동 감청을 요청한 관계장관과 전기·전자통신담당장관에게 전항의 건의사실을 통보한다. ⑤ 위원회는 수상에 대해 본 법 제5조에 정한 감청업무의 할당 및



7) 프랑스의 경우 우리와 달리 대법원이 행정사건에 대한 최고심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사원의 기능 중의 하나가 행정사건에 대한 최고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conseil-etat.fr/cde/> 참조.

8) 파기원은 프랑스의 일반 민형사최고법원의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프랑스의 경우 행정사건과 일반민형사사건의 최고심은 별개의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파기원의 구체적인 조직 및 권한에 대해서는 <http://www.courdecassation.fr/> 참조.

배분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⑥ 수상은 제5항의 권고에 대한 이행사실을 지체없이 동 위원회에 통보한다.”라고 함으로써 국가안보 감청 통제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5조는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감청을 집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안보감청을 통제할 수 있다. ② 안보감청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동 위원회는 수상에게 집행 중인 감청의 중단을 건의하며, 본 법 제14조 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한 통보절차를 따른다.”라고 함으로써 위원회의 안보감청에 대한 통제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 3) 다른 기관의 협력의무

국가안보감청통제위원회의 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법 제16조는 “각 부 장관,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위원회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4) 위원회 예산 및 보고

위원회의 예산에 대해서 동법 제18조는 “① 위원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보호에 관한 ‘정부활동방향’(Direction de l'action du Gouvernement) 미션프로그램으로 편성된다. ② 위원회의 지출은

위원장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는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상태와 활동업적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수상에게 제출하게 된다... 동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된다.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시를 수상에게 건의한다.”라고 함으로써 위원회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III. 맺음말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하는 프랑스의 “전기통신적 수단에 의해 발신된 통신의 비밀에 관한 1991년 7월 10일 법률”은 사법권에 의한 감청과 국가안보 등을 위한 감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권에 의한 감청의 부분은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본문에서와 같은 개괄적인 연구조사는 프랑스의 통신비밀보호법제를 이해하기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통신의 자유에 대한 보다 기본적인 이해와 통신비밀과 관련된 법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보다 충실한 통신비밀보호법제의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한 동 훈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원)